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"를 "지방청소년위원회"로 한다.

제1조(목적)중 "청소년육성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"를 "청소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"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"를 "충청북도지방청소년위원회"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제1항중 "15인이상 20인이내"를 "15인이내"로 한다.

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,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제3조(운영) 제1항, 제2항,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.

①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
2.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
3. 청소년수련시설(이하 "수련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관리 및 지원
4.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
5.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

동조 "제4항"을 "제2항"으로 한다.

제5조(실무위원회의 구성) 제1항중 "20인이내"를 "15인이내"로 한다.

제6조(실무위원회의 기능)중 1. "심의"를 "자문"으로 한다.

제10조(준용)중 "청소년육성법"을 "청소년기본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